세무회계 동행
DONGHAENG TAX CONSULTING COMPANY

세무대리보수기준표
(2026년)

※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세 별도임

Ⅰ. 기장대행 보수월액표 (“기장료”)

기준금액	3억 미만	3억~5억	5억~10억	10억~20억	20억~30억	30억~50억	50억~80억
개인	100,000	150,000	200,000	250,000	300,000	450,000	600,000
법인	200,000	250,000	300,000	400,000	500,000	650,000	800,000

별도 적용 구간	적용 기준	월 기장료
부동산 임대업	사업자등록번호 1개당	50,000원
1인 개인사업자	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억 원 미만이며 인건비 신고가 없는 경우	80,000원
소규모 법인	직전 사업연도 매출액·자산총액 각각 1억 원 미만 인건비 신고가 없거나 대표자 1명의 급여 신고만 있는 경우	100,000원

① 기준금액: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자산총액 중 큰 금액(개인사업자는 매출액)
②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 상기 보수표에 20% 가산
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의료업, 약사업, 건설업 등 특수업종은 별도 협의에 의함

Ⅱ. 세무조정계산서 보수표(“법인세·종합소득세 조정료”)

수 입 금 액	개 인	법 인
1억원 미만	300,000	400,000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300,000 + 초과분의 0.15%	400,000 + 초과분의 0.18%
3억원 이상 5억원 미만	600,000 + 초과분의 0.125%	760,000 + 초과분의 0.14%
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850,000 + 초과분의 0.1%	1,040,000 + 초과분의 0.11%
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	1,350,000 + 초과분의 0.08%	1,590,000 + 초과분의 0.09%
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	2,150,000 + 초과분의 0.06%	2,490,000 + 초과분의 0.07%
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	2,750,000 + 초과분의 0.04%	3,190,000 + 초과분의 0.05%
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	3,150,000 + 초과분의 0.03%	3,690,000 + 초과분의 0.04%
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	3,450,000 + 초과분의 0.02%	4,090,000 + 초과분의 0.03%
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	4,450,000 + 초과분의 0.01%	5,590,000 + 초과분의 0.02%
5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	8,450,000 + 초과분의 0.008%	13,590,000 + 초과분의 0.01%
1,000억원 이상	협의 후 결정	협의 후 결정

① 기준금액: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과 연말 자산총액 중 큰 금액

② 결산과 조정 업무를 같이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20% 가산(법인, 개인 공통)

③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10% 가산(법인, 개인 공통)

④ 외부 회계감사 대상은 20%, 상장법인은 30% 추가 가산(법인)

⑤ 본지점 합산 시 지점 개수당 10% 가산(법인)

⑥ 공동사업의 경우 10% 가산(개인)

⑦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 위 보수표의 70% 적용

Ⅲ. 세무자문 또는 고문 보수표

수입금액	50억이상 100억미만	100억이상 500억미만	500억이상 1,000억미만	1,000억 이상
보수월액	300,000원	500,000원	700,000원	1,000,000원

Ⅳ. 불복청구대리 보수

취소·경정감액	5천만원 이하	5천만~5억원	5억원~10억원	10억원 ~ 50억원	50억원 초과
보수 상한 기준	1천만원	5천만원	1억원	5억원	10억원

① 불복 청구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, 심사 및 심판청구, 조세와 관련된 행정심판을 망라한다.

② 계약금액의 10~50%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받을 수 있음

Ⅴ. 상속세 및 증여세,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대리 보수표

재 산 총 액	보 수 기 준
1억원 미만	1,000,000
1억원 이상 5억원 미만	1,000,000 + 초과분의 0.5%
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3,000,000 + 초과분의 0.4%
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	5,000,000 + 초과분의 0.3%
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	11,000,000 + 초과분의 0.2%
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	15,000,000 + 초과분의 0.15%
100억원 이상	22,500,000 + 초과분의 0.1%

① 상속세 신고는 상기 보수표에 100%, 증여세는 50%, 양도소득세는 30%를 적용함

② 각종 공제·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의 20% 가산

③ 상속세 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수감 시 별도 계약에 의함

④ 신고 난이도,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위 보수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협의에 의함

Ⅵ.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신고대리

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: 건당 30만원

② 부가가치세 신고 : 건당 10만원 (무실적신고의 경우 5만원)

③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: 건당 10만원

④ 종합소득세 신고 : 50만원 ~
(위 **Ⅱ. 세무조정계산서 보수표** 에 따른 금액의 120% 적용하되 최저기준 50만원 적용)

Ⅶ. 기타

① 기타신고대리

ⅰ) 부가가치세 신고 : 10만원 ~

ⅱ) 종합소득세 신고

- 경비율 신고 : 3만원 ~
- 간편장부 신고 : 20만원 ~
- 복식장부 신고 : 계약에 의함

② 세무상담 :

ⅰ) 상담 1시간 이내 10만원(30분 초과시 5만원씩 가산)

ⅱ) 인터넷(유료) : 건당 5만원(20분 기준)

ⅲ) 서면상담 : 계약에 의함

② 모의세무조사 : 1일(8시간 조사기준) ← 외형, 난이도에 따라 계약에 의함

③ 세무조사참관 : Ⅳ의 불복청구대리 보수에 준함

④ 세무에 대한 컨설팅보고서 : 계약에 의하나 보고서 작성 소요 1일 50만원 기준으로 함

⑤ 세무아웃소싱업무 : 1주일 1회 세무사 파견 월 보수 200만원 기준